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9일, 박상웅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상웅의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신축 기숙사를 취득 시 추정규정을 완화(해당 용도 미 사용 기간 1년 → 2년)하려는 내용임.

최근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례 신설 여부는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 확보 필요성, 타 지역 내 기숙사와의 과세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